

기금의 배분기준(제16조제8항 관련)

1. 도(道)별 기금 배분금액 = 기금 기준액(A) × (같은 도 안에 진흥지구가 있는 시·군의 배분비율의 합)
2. 진흥지구가 있는 시·군의 배분비율 = (B × 0.4) + (C × 0.3) + (D × 0.3)

※ 비 고

- 가. A: 해당 연도 기금에서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기금의 운영·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.
- 나. B: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·군의 석탄생산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·군의 1988년도 점유율
- 다. C: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·군의 석탄생산량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·군의 석탄생산감소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·군의 지난 연도 석탄생산감소량의 점유율
- 라. D: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·군의 인구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·군의 인구감소율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·군의 지난 연도 인구감소율의 점유율